
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0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9.

발의자 : 민홍철 · 윤후덕 · 황주홍

김관영 · 김현아 · 김현권

임종성 · 이찬열 · 이우현

윤영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시·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·시행토록 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
지자체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
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되도록 하고, 우수
건축자산을 포함한 공간 환경의 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
시 그 목적에 맞는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
심의를 받도록 하며,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
위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
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수립·시행하
도록 한 시행계획을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

- 내에 수립하도록 수립기한을 변경함(안 제5조제1항).
- 나.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 조항의 내용을 각 호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, 전문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으로 변경함(안 제6조제1항).
- 다. 건축자산 진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개별 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고려한 밀집된 집단경관에 대한 심의도 필요하므로 건축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함(안 제17조제1항).
- 라. 건축자산 진홍구역의 유지·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정 시설 또는 업소의 설치를 금지·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9조제4항 신설).
- 마. 건축자산 진홍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호로 나누어 정리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1조).
- 바.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「건축법」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추가함(안 제26조제4호).
- 사.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을 추가함(안 제26조제5호 신설).
- 아.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「민법」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추가함(안 제26조제7호 신설).

자. 도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를 건축자산 특별회계 설치권자에 추가함(안 제36조제1항).
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”을 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”로,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매년 1월 31일까지 「건축기본법」 제18조”를 “「건축기본법」 제18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”를 “다음 각 호의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전문기관”을 “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
 2.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
 3.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
-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축위원회의”를 “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·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
2.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3.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
 2. 「건축법」 제46조·제47조·제58조·제59조
- ② 시·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·보전 및 활성화를

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한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26조제4호 중 “건축면적 산정방법”을 “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

7. 「민법」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
제36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
를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심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

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17조(건축자산 진홍구역의 지정 등) ① 시 ·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제19조(건축자산 진홍구역 관리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-----.
----- 관계 행
정기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--
-----.

1.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

2.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

3.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건축자산 진홍구역의 지정 등) ① -----

-----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건축자산 진홍구역 관리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

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는
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 · 보
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
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
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
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
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
특례법」에 따른 사행행위영
업

2.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
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것

3.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
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
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
는 것

④ (생 략)

제21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
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
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
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
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21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
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
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
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
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

홍구역에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및 「건축법」 제46조 · 제47조 · 제58조 · 제59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
2. 「건축법」 제46조 · 제47조 · 제58조 · 제59조

제26조(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「건축법」 및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

산 진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
 2. 「건축법」 제46조 · 제47조 · 제58조 · 제59조
- ② 시 ·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홍구역의 특성 유지 ·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홍구역에 한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26조(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 -----

